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나1163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남다영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소11873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2. 25.경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자들에게 속아서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프로그램이 깔리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범행자들은 2020. 2. 26. 원고의 C증권 계좌에서 피고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명의자를 E로 하여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태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보유 중이던 태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태국 환전 중고거래 이용방'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대화 명의자: F)로부터 환전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의 D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을 받은 다음 피고의 태국 은행계좌에서 그 사람이 지정한 태국 은행계좌(명의자 : G)로 태국 돈을 이체해 주었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D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피고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2020. 6.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작되었던 피고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도 피고의 이익을 받아들이어 2020. 3. 24.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으로 취득한 이익 2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모르는 사람과 불법 환전거래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성명불상자와의 환전거래에 따라 이 사건 송금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는 환전거래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급부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성명불상자(대화 명의자 : 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② 환전 과정에서 대화 명의자(F)와 한국 돈 송금인(E), 태국 돈 수취인(G)이 모두 다르고, 대화 명의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큰 금액의 환전을 요청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화 명의자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와 대화 명의자 사이의 환전거래 합계액이 32,600,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로서는 대화 명의자와의 환전거래가 정상적이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점, ⑤ 원고가 피고의 D은행 계좌 및 H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환전거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대화 명의자에게 항의하였을 뿐, 태국 돈 수취인(G) 명의의 태국 은행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지는 아니하고 과실에 의한 방조만 인정되는 점, 원고의 피해금액 및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000,000원(= 20,000,00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6. 1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1. 10.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당우증, 판사 최정인